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2. 21 선고 2020나21775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2. 21 선고 2020나217756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0. 13 선고 2019가단1953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

변론종결 2021. 11. 23.

판결선고 2021. 12. 21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0. 13. 선고 2019가단19535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.

8. 25. 접수 제984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

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, 원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. 이

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, 판사 박이규